

1. 개정이유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국내투자 확대라는 국내복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강화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 시 축소 방법에 대한 확인 강화 (규칙 제3조 제2항)

- 1) 현행규정상 해외사업장의 축소여부 확인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직접적인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업황 등에 따른 일시적 매출액 감소인지 확인 불가
- 2) 매출액 감소기준(제조업 25% 등) 충족여부 뿐 아니라 직접적인 구조조정 행위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구조조정 계획 및 결과를 제출토록 관련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생산설비의 매각, 일부 시설의 폐쇄, 사업장의 일부매각, 장기 외부임대, 인력 구조조정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행위를 통하여 다음”으로, “기준에 적합”을 “기준을 충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개요		
신청일시	20 년 월 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20 년 월 일	
축소 대상	사업장명	
해 외사업장	소재지	

해외사업장 축소		
①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또는 축소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 · 서비스의 생산량	기 간	. . . ~ . . .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②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또는 축소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 · 서비스의 생산량	기 간	. . . ~ . . .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축소 비율 = (① - ②) ÷ ①		%
축소 유형	[]설비 매각 []생산시설 폐쇄 []사업장 매각 []외부 임대 []인력 구조조정 []기타 (※ 복수선택 가능)	
	※ 구체적 축소이행결과 기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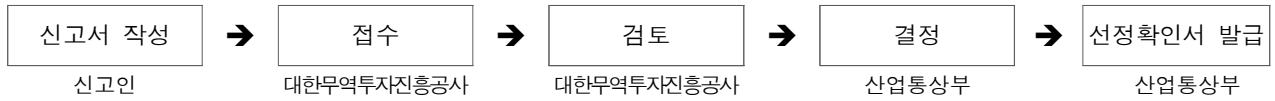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경상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현지화로 기입하고, 생산량은 해당 제품·서비스의 생산단위로 기입합니다.
2. 축소의 대상이 된 해외사업장 관련 사항을 기입합니다.

처리절차



297mm×210mm[백상지 80g/㎡]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관련

[] 국내복귀계획서

[]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5쪽중 제1쪽)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의 경우				
구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청산·양도 완료일	[] 청산의 경우	청산일 :	청산종결 등기일	
			청산인의 최종신고일	
			조세관련 기관에 대한 폐업신고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청산완료일 (청산내용)	
	[] 양도/지분매각의 경우	양도일/지분매각일 :	사업양수·양도 계약에 따른 매매대가 잔금수령일	
			해외지분 매각·처분 대가 잔금수령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양도완료일 (양도/지분매각 내용)	
	선정일		(접수기관이 기재)	
국내 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		(접수기관이 기재)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구분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청산의 경우	청산대상 사업장명		
	현지 청산 신고기관 기관명		
	현지 청산 신고기관 연락처(전화, 팩스)		
[] 사업 양수·양도의 경우	양도대상 사업장명		
	양도가액		
	양수자		
	양수자 연락처(전화, 팩스)		
[] 지분 매도의 경우	지분 매도대상 기업(사업장명)		
	매도 지분		
	매도 후 보유지분		
	매도가액		
	매수자		
	매수자 연락처(전화, 팩스)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국내복귀계획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축소 대상 해외사업장	사업장명			축소 대상 해외사업장	사업장명		
	소재지				소재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또는 축소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①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 년간 또는 축소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서비스의 생산량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또는 축소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①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 년간 또는 축소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서비스의 생산량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또는 축소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②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 년간 또는 축소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서비스의 생산량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또는 축소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②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 년간 또는 축소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서비스의 생산량	
축소 비율 = (① - ②) ÷ ①		%		축소 비율 = (① - ②) ÷ ①		%	

축소유형	[]설비 매각 []생산시설 폐쇄 []사업장 매각 []외부 임대 []인력 구조조정 []기타 (※ 복수선택 가능)	축소유형	[]설비 매각 []생산시설 폐쇄 []사업장 매각 []외부 임대 []인력 구조조정 []기타 (※ 복수선택 가능)
	※ 구체적 축소이행계획 기술		※ 구체적 축소이행결과 기술
선정일	(접수기관이 기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의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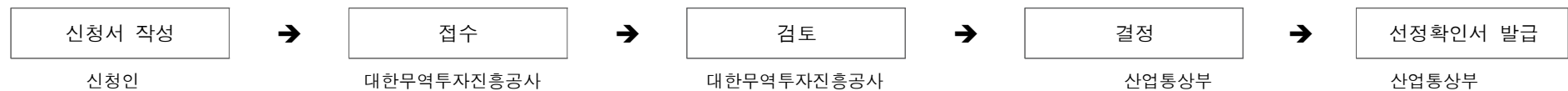
첨부서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국내복귀계획 이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1. 해외사업장 소재국 정부가 발급한 청산 관련 서류(청산종결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2.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3.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4.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5.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국내복귀계획서’는 서식의 음영처리되지 않은 난을,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는 서식의 음영 부분을 작성합니다. 다만, 국내복귀계획 관련 ‘선정 신청일’과 ‘국내 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은 접수기관 기재사항으로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의 경우 청산·양도 완료일은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u>다음</u> 각 목의 구분에 따른 <u>기준에</u> <u>적</u> <u>합</u> 할 것	2. ----- ----- ----- <u>생산설비</u> <u>의 매각, 일부시설의 폐쇄, 사업장의 일부매각, 장기 외부임대, 인력 구조조정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행위를 통하여</u> <u>다음 --- 기준을 충족</u>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